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 심 사 보 고 서

2001. 3. 16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2월 26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2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185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2001. 3. 14)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 가. 제안이유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결정에 따라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모집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위탁대상시설.
  - 시 설 명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63,000톤/일(폐수 40,000, 오수 23,000)

- 부지면적 : 78,748m<sup>2</sup>(23,821평)
- 처리방식
  - 수 처리 : 중력침전, 생물학적영양염류제거, 3차고도처리
  - 슬러지처리 : 원심탈수, 매립 또는 소각
- 기타 부대시설  
차집(폐수)관거, 증계펌프장, 방류관로, 기타 관리동의 9종  
단. 별도 인계인수서에 의함

○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 냉·난방시설의 관리업무
- 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 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시약류등 관리
-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 폐수배출업체의 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승인, 배수설비설치승인, 배수설비설치검사,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업무
-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 관리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단, 위·수탁업무 내용 및 처리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수탁사무의 처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직인을 사용

○ 명 칭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사업소

○ 위탁관리기간

- 위·수탁기간은 협약 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운영관리권 이관
- 위·수탁 내용 변경시 협의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

○ 위탁관리비

- 2001년 위탁관리비는 ○○○원으로 한다.  
2001년도 예산 370,000,000원(붙임 비목참조) : 계약체결시 변경
- 위탁관리비는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원가계산 누락된 비목은 협약기간내 추가조정 불가, 협약기간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변경등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협약 변경 가능
- 수선유지비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등의 개·보수비 포함 수탁시설 하자보수기간중에는 하자보수의 한계규명 실비정산
- 인건비 제외한 전력비, 약품투입비, 유지보수비등은 실제 납입금액으로 정산

○ 자산투자비의 부담

- 사무기기, 공구, 차량구입등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하되 다음비용은 위탁자 부담
  - 위탁자산의 가치 증진 및 내용연수 증진하는 시설·개·보수공사
  - 기자재 등 유동자산의 확보
  -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 수탁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기계장치 및 시설물등은 수탁자가 책임지고 보수 및 유지관리

○ **협약이행보증금**

협약시 연간 위탁관리비를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 납부

○ **재위탁의 금지**

수탁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금지

○ **법령 등의 준수**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관계법령 및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영에관한조례와 동시행규칙,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 준수

○ **업무의 적정관리**

-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 수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자격 소자자 배치

○ **수질관리**

- 방류수 수질을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약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개선대책 강구
-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탁자의 책임

○ **시설설비등의 사용**

- 위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등을 수탁자에게 무상 제공.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 인도
- 무상 제공할 재산의 범위는 위탁자가 별도로 정함
- 위탁자가 무상제공키로 정한 재산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차량 등은 수탁자 부담 확보

○ **사고보고**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름. 수탁재산 변동사항도 같음

○ 조사등

-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성실 이행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매반기마다 정기적 평가
-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시 조사, 보고 필요한 지시 가능
- 수탁자는 조사등과 관련한 위탁자 요구의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 및 확인

- 수탁자는 매월 수탁업무 처리성과 보고 및 확인

○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 위탁관리비는 월 단위로 수탁업무처리성과 보고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리성과 확인후 매의월 15일까지 지급
-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말까지 수탁업무결산서 작성제출
-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 예산안을 편성 위탁자의 승인
-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 기밀유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민·형사상의 책임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협약의 해제

-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자는 협약해제 가능
  -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 위탁자가제시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위의 규정외에 필요한 경우에도 협약 해제 가능.  
단, 협약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전까지 통지

-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협약 해제 가능

### ○ 손해배상

- 수탁자의 귀책사유시 협약 해제될 때 3개월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 지불
- 위탁자의 협약 해제로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 배상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힌때 손해 배상
-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쌍방간 협의 결정
-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 제3자(하류지역주민등)에게 손해를 입힌때 수탁자 부담으로 배상 다만, 손해의 발생이 위탁자의 책임인 경우 위탁자가 부담

### ○ 기타사항

- 공공의 목적상 가압장등 용수시설등 관련부서 이관전까지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관리
- 수탁자는 신규 또는 결원 보충시 지역의 고용기회 제공
- 수탁자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 및 부대시설 개방 등 서비스 개선 노력

### ○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함

### ○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검토한바,

이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하천인 미호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제184회 임시회 심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협약서안 제6조의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내용으로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붙임서류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관리위·수탁협약서안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위·수탁협약서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7조 및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각각 위·수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이 협약은 처리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수탁 운영관리대상 재산의 명세)** 운영관리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별도(별표1)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업무의 세부적인 내용 및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 (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시행하되, "갑"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본 처리시설의 명칭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사업소"라 칭한다.

**제6조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수탁 운영 개시일은 ○○○○년 ○월 ○일로 한다.

②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관리공단등에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한다.



③위·수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전 협약연장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위탁관리비)** ①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연간 ○○○○○○○○○○○원으로 하며 비목별 내역은 별도(별표2)로 정한다

②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은 "을"이 부담하며·위탁관리비는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갑"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위탁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의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변경 등 당초 위탁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수선유지비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등의 개·보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수탁시설의 하자보수기간중에는 하자보수의 한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수선유지비로 "갑"이 산정한 원가계산액 범위내에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인건비를 제외한 전력비 및 약품투입비, 유지보수비등은 "을"이 부담하되 연말에 실제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제8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수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구입등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1.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
2. 기자재 등 유동자산의 확보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②"을"은 제1항의 내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 까지 "갑"에게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기계장치 및 시설물등은 "을"이 책임지고 보수 및 유지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사용토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갑"에게 보고하여 교체여부를 확인후 교체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이행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위탁관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을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위탁의 금지)** "을"은 수탁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12조 (법령등의 준수)** "을"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관련법령,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정하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적정관리)** ①"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갑"과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을"은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질관리)** ①"을"은 방류수 수질을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약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을"은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시설설비등의 사용)** ①"갑"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②무상 제공할 재산의 범위는 "갑"이 별도로 정한다.

③"갑"이 무상제공키로 정한 재산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차량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한다.

**제16조 (사고보고)** "을"은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조사등)** ①"갑"은 위탁업무의 성실 이행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갑"은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을"은 조사 등에 관련하여 "갑"이 요구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적보고 및 확인)** "을"은 매월 수탁업무의 처리성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위탁관리비는 월 단위로 수탁업무 처리성과 보고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처리성과 확인후 매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②"을"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말까지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을"은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회계 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밀유지)** "을"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 (협약의 해제)**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갑"이 제시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②"갑"은 제1항 각호의 규정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이 협약을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을"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제될 때에는 3개월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제로 "을"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를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하류지역주민등)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24조 (기타사항) ①** "을"은 공공의 목적상 가압장등 용수시설에 대하여도  
관련부서 이관전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운영관리를 위한 신규 또는 결원 보충시 지역의 고용기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부대시설을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  
야 한다.

**제25조 (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  
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년 ○ 월 ○ 일

"갑" 충청북도지사 ○ ○ ○

"을" (주)○○○○ 대표이사 ○ ○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차리시설운영관리위·수탁협약서안  
신 구 대 조 문

조 문	당 초 안	변 경 안
<p>제6조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p>	<p>②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 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 는 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 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관리공 단등에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한 다.</p> <p>③위·수탁기간을 연장할 때에 는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협 약연장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 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한다.-----</p> <p>③---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p>
<p>제10조 (협약이행 보증금)</p>	<p>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위탁관리비 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증권을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p>	<p>-----협약시 연간 위탁관리비를 기준으로 3개월분 이상에 상당하는-----</p>

## 關聯法規 (部分拔萃)

###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생략

### □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 제4조 (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7조 (협약체결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 제3조 (위탁의 동의요청)

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실·과·소장이 미리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

○ **제4조(처리시설의 위탁)**

①관리권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 이라 한다)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에 위임·위탁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